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11

발의연월일: 2025. 3. 7.

발 의 자:이상휘・이헌승・서일준

최수진 · 김정재 · 최은석

정동만 • 박충권 • 신성범

박성훈 • 박상웅 • 조지연

김장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한민국의 인공지능(AI)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함. 하지만 이들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는 현행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, 고급인력이 인공지능 개발 및 산업분야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는 상황임.

이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,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여,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자 함(안 제36조의2 신설).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6조의2(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편입·전직에 대한 특례 등) ① 병무 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.
 - ②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.
 - ③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있다.
 - ④ 제39조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원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다.
 -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편입, 전직 및 자격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6조의2(병역지정업체 선정 및
	편입ㆍ전직에 대한 특례 등)
	① 병무청장은 제36조제1항에
	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
	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
	율 이상을 인공지능기술의 개
	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
	간산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.
	②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
	따른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
	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
	의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.
	③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
	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의 개발
	및 인공지능산업 분야 병역지
	정업체로 선정된 기간산업체에
	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원할 경
	우 제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
	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.
	④ 제39조제3항 단서에도 불구
	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
	능요원은 원할 경우 제1항에

따라 선정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 병 역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다.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 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편입, 전직 및 자격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